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3서식]
<개정 2020. 9. 11.>

보존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종(種)이 다수일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 년도 고위혈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

보고자	기관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	전화번호
	주소		
	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	성명	전자우편주소
		소속/직위	전화번호
	생물안전관리 책임자	성명	전자우편주소
		소속/직위	전화번호

[illegible]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의 보유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$\frac{1}{\sqrt{2}}$
 $\frac{1}{\sqrt{2}}$
 $\frac{1}{\sqrt{2}}$

보고자(대표자)

(직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